

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소 방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

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동의안은 2010년 3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 개정(2010. 1. 1)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어 도세 세목을 추가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며,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,
-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재산보유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시설세의 세율 인하를 2009년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으나,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여 세율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가 금년도에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도세 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신설 (신설, 제3조제2항제4호)
- 지방소비세 납입확인 규정 신설 (신설, 제52조의2)
 - 납인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경우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확인 후 이의제기 및 정정요구토록 함.

- 주민세와 사업소세 통합에 따른 용어 개정 (안 제77조, 제78조제1항 제3호, 제79조제)
 - “주민세균등할” ⇒ “주민세 균등분”으로 개정
- 공동시설세 세율인하 적용시한 1년 연장 (부칙 개정)
 - 조례 제3172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 개정
 - 2009년도 납세의무 성립분 ⇒ 2009년도 및 2010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으로 개정 ※ 적용시한 1년 연장

4. 검토의견

가. 도세 조례 개정배경 및 추진과정

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법(2010. 1. 1) 개정에 따라 시·도세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음.

▶ 도세 조례 개정 추진과정

- 행정안전부 도세 조례 표준안을 시도 통보(2010. 1. 5)
- 행정안전부 '10년도 목적세율 인하 조례개정 표준안 시도통보(2010. 1.18)

충청북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도세 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도세 조례를 검토·확정하여 금번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임.

나. 주요개정내용

-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도세 세목체계 개편

개정된 지방세법(2010. 1. 1)에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서 지방소비세를 도세로 편입시키고 처리절차를 규정함.

- 도세 보통세의 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추가하고
- 도세 부과·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·군수에 위임처리 하던 것을 지방소비세에 한하여 도지사가 직접처리토록 하며,
- 지방소비세의 납입확인을 도지사가 매월 확인, 정정요구토록 함.

□ 목적세인 공동시설세율 인하를 1년 연장하여 세부담 완화

○ 현행,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공동시설세율을 과세표준액 구간별로 각각 0.01%P인하한 공동시설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줄였음.

- 지방세법 개정(2009. 2. 6)으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함에 따라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증가하여
- 공동시설세 세율을 과세표준액 구간별로 각각 0.01%P인하 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, 충북도 도세 조례를 개정하여 2009년도에 공동시설세 세율인하를 시행함.

○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공동시설세 세율인하를 계속할 예정이었으나, 과세기준일(6. 1)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하여 조례에서 '09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세율인하를 1년 연장하려는 것임.

□ 지방소득세 신설(주민세와 사업소세 통합)에 따른 용어 정비

- “주민세균등할”을 “주민세 균등할”로 변경

다. 종합의견

금번 개정안은 지방세법에서 신설된 지방소비세를 도세 세목으로 신설하고, 그에 따른 사무처리를 도지사가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, 현행 시행중인 공동시설세의 세율인하 적용시한을 2009년에서 2010년까지 1년을 연장하는 등 도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.

이는 도세 세목체계의 정비와 재산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내용은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